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계획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7조,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I. 사업 개요 및 신청 접수

1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



※ 위 심사평가일정은 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별도 안내 (6월 예정)

** 특화훈련 과정심사는 추후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용어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 | |
|---|------------|
| ① 기본평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 제12조 제1항 |
| ② 역량평가: 훈련성과평가 + 훈련실시역량평가(현장평가) | 제12조 제1항 |
| ③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 제12조 제1항 |
| ④ 과정심사: 기본요건심사 + 과정적정성심사 + 성과심사 + 훈련비심사 | 제19조, 제20조 |

- ❖ 2025년부터 **원격훈련의 기관인증평가 및 과정심사**는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원격) 심사평가 계획 공고(‘24.12.27)」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 **(신청대상)**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집체 훈련기관

유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해당 기관*은 인증평가 제외
 - 단,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해당 기관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해야 함
 - *사업주자체훈련과정 운영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공공직업훈련시설, 계약학과, 사내대학, 기술대학 등 학위과정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 운영기관, 특성화고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만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신청대상은 아니지만, 인증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해당 기관 중 인증등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관일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평가 신청

- **(신청기간)** 2025.4.14.(월) 10:00 ~ 4.25.(금) 18:00
 - 2025.4.7.(월)부터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 사용 기간 운영
 - * 시범 사용기간 내 입력한 정보는 '임시저장' 상태이므로, 신청기간 중 내용 추가, 수정 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최종제출'로 신청완료 요망
 -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
 - ※ 상세 사용방법은 2025년 4월 공지 예정인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
 - 2025년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심사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인증유예' 부여
 - ※ 실적보유기관의 경우 2025년도 신청대상 별도 공지 예정(2025.4월 예정)
 - 자체평가보고서는 2025년도 현장평가를 참여하는 기관만 제출 필수
 - 평가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준비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고용24」 ①회원가입(훈련기관) 및 ②행정지원이용 신청을 통해 '훈련기관 관리번호'(9자리) 발급이 완료(승인)된 기관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가능
- **(실시가능 직종 등록·승인)** 실시가능 직종*으로 승인받은 직종에 한하여 **과정심사 신청 가능**
 - *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 은 훈련 운영 전까지 실시가능직종 승인 완료
 - (신청기간) 실시가능직종은 상시 신청 가능하나, 2025.4.14.(월)~4.25.(금)까지는 **신청 제한**
 - (검토기간) 신청 후 승인·반려 등 결과까지 최소 7일 이상 소요되므로, 신청 제한기간 7일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신청 권장
 - ※ 심사평가 신청기간에 반려된 직종에 한하여 신청기간 내 증빙자료 변경·보완 가능(직종 변경 및 추가 불가)
 - ※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제외 또는 취소
- **(NCS 확인강사 등록)** NCS 확인강사로 승인받은 사람만 **과정심사 교·강사로 등록 가능**
 - ※ 해당 교·강사는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신청경로)** 신청대상 유형별로 신청경로 및 신청내용(인증평가+과정심사, 인증평가, 과정심사)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 참여유형별 신청경로 안내 >

구분	신청대상 유형	신청경로	
인증·과정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기연계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포함) - 특화 훈련과정 중 돌봄서비스 훈련 (요양보호사·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에 한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 심사평가(인증·과정 일원화)	
		인증 평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인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등 	과정 심사	추후 사업(훈련)별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
과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기존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받은 기관 	인증 평가	면제
		과정 심사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과정심사

※ **(훈련실적 반영 선택)**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실적은 기본적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훈련의 **2023.1.1.~2024.12.31.** 종료실적을 인증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게 선택권을 부여함. 다만 평가신청기간 이후에는 선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불가

(예시1) ①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과 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을 운영하는 (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반드시 '심사평가 일원화' 신청메뉴 선택 및 「202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인증+과정)」로 신청

- (예시2) ③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만 운영하는(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반드시 '인증평가' 신청 메뉴 선택 및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로 신청
- (예시3) ①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또는 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을 운영하는 우수훈련기관 중 보유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에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없을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반드시 문의

3

정정·보완

- **(정정·보완 기간)** 2025.4.28.(월) 10:00 ~ 5.2.(금) 18:00
 -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정정·보완 기간 내 심사평가 신청 항목 정정·보완 가능
- **(정정·보완 범위)** 심사평가 신청 관련 항목 일부
 -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된 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자료(사업자 등록증명원) 및 인증평가 신청 정보 정정 가능
 -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된 훈련과정 일부 항목(훈련교재, 훈련 교·강사, 훈련시설, 훈련장비, 정원, 교수학습·평가방법) 정정 가능하며, 훈련과정명,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비 등은 변경 불가

4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 **(결과발표)** 2025.10.31.(금) 예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결과 공고 확인 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훈련기관별로 조회 가능
 - ※ 결과발표는 심사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시 심사신청서에 등록된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SMS 발송 예정
 - ※ 재정건전성 평가는 감점에 대한 훈련기관 소명자료 제출이 원활하도록 별도 안내 (25.6.20.(금) 예정)
- **(이의 신청)**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결과발표 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 ※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결과 공고 시 세부 안내

II. 심사평가 세부 계획

1

기본평가

□ 평가구분

- 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세금 체납여부, 신용수준) 및 준법성(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제재 처분, 과태료 부과 내역 등) 평가

□ 평가대상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

□ 평가대상기간: 2024.1.1. ~ 12.31.(1개 연도)

□ 평가방법: 서면평가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즉시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반드시 한글로 발급

- 개인 또는 법인(영리/비영리) 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시설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반드시 제출

- 공동대표자인 경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공동대표자 전원을 반드시 등록

* (경로)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정보관리 > 훈련관계자 등록/수정에서 직위를 '대표'로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업데이트

□ 제출방법: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출

※ (경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일원화(인증평가) > 평가신청 > 평가공고조회 > 평가참여신청서 > 첨부파일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일 첨부 및 발급번호 입력**

유의사항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반드시 수정 필요

1. 재정건전성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각 10점씩 감점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조회하여 평가
- **(신용수준)**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하 해당 시 5~20점 감점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조회하여 평가

<신용수준 평가 감점 기준>

기업 신용등급별 감점 기준	감점기준
① A~B등급	-
② CCC등급(CCC+, CCC-포함)	5점
③ CC등급(CC+, CC-포함)	10점
④ C등급(C+, C-포함)	15점
⑤ D등급, 사업자등록증명원 미제출	20점
⑥ 무등급* 또는 불인정 서류(90일 경과 및 그 밖의 서류 등)를 제출한 경우 * 기업이 신용정보를 비공개 요청하여 조회 불가 등	

2. 준법성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내역)**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2024.1.1.~12.31.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 감점(훈련실시 이력에 관계 없이 해당 사항 발생 시 감점 적용)
 - * 시정지시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경우 해당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시 감점 적용
 - 근로감독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시정완료로 종결되었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부정수급, 허위 과정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이 2024.1.1.~12.31.에 해당할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건당 감점
 -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처분의 유효기간이 2024.1.1.~12.31.에 포함되는 1년 이상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의 경우 인증유예 부여

<준법성 평가 감점 기준>

구분	기본 감점	추가 감점				훈련생(수료생) 허위 취업 행정처분 건*
		제한기간			부정 수급 (100만원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1점				
계약해지(인정취소),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5점	-	+3점	+6점	+2점	+5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10점	-	+5점	+10점	+2점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공고 이후 행정처분부터 적용

※ (예시)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시 기본감점 5점과 위반 사유가 훈련생(수료생) 허위 취업일 경우, 기본감점(5점), 훈련생 허위 취업(5점) 추가 감점을 합산하여 총 10점 감점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2024.1.1.~12.31. 기간에 해당할 경우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 과태료 부과 감점 기준 >

구분	과태료 부과 1차	과태료 부과 2차
감점	10점	20점

- **(준법성 연속 감점)** 부정·부실 운영으로 2년 연속* 행정처분**이 발생한 훈련기관은 기본평가 '부적합'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 처분일 기준 2023.1.1.~2024.12.31.에 발생한 내역

** ①임금관련 법 위반이 2년 연속되거나, ②시정명령을 제외한 제재처분(지도점검 불응 과태료 부과 포함)이 2년 연속될 경우

- **(사회적 물의 등 심의위원회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증유예' 즉시 부여 및 기존 보유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단축 조정 가능

※ **(예시)** 훈련기관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 시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예시)** 인증유예·부정훈련·행정처분 발생기관이 인증유예 회피를 위해 신규기관을 설립 대표자를 변경 또는 타 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2

역량평가(훈련성과, 현장)

□ 평가구분

- **훈련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수요자만족도 등) 평가와 **현장평가**(훈련 운영관리·훈련인프라·훈련전담인력)로 구분

□ 평가유형

<훈련종료실적 보유 여부에 따른 평가유형>

구분	주요내용
실적보유기관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024.12.31.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5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2026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유지 또는 새로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
신규기관 (실적미보유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024.12.31.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 ※ 단, 2026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더라도 신규기관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분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훈련과정 중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노사협력형 특화훈련 제외(K-디지털 트레이닝,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선택권 부여)

유의사항

- ▲ 2025년도 현장평가 참여 선택 기관 중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신규 우수훈련기관 선정 희망기관 포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유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
(단,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참여 선택 불가)

□ 실적산정기간: **훈련과정 종료일 기준 2023.1.1. ~ 2024.12.31.(2개 연도)**

□ **평가방법**

- **(훈련성과 평가)** 훈련생 데이터(2025년 7월말 기준)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직접 평가
 ※ 다만, 수요자만족도는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현장평가)** 훈련기관을 평가팀이 실제 방문하여 훈련 운영·관리를 위한 훈련기관의 종합적인 훈련실시역량을 평가

□ **제출서류**

< 평가구분별 제출서류 및 제출시점 >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점
훈련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또는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에 한하여 아래 자료를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재직자 또는 사업주위탁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정보 - 사업주위탁훈련에 참여한 기업체 담당자 정보 	심사평가 신청 시 (대상 기관 별도 안내)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단, 증빙서류는 현장평가 당일 제출) ○ 시설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가장 최근에 받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추가 제출 (단, 미제출 시 일반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 신청 시

1. 훈련성과 평가

○ (평가대상) 실적산정기간 내 평가대상사업 훈련 종료실적이 발생한 실적보유기관

※ 평가대상사업 훈련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은 훈련성과 평가는 제외하되, 기본평가는 실시

유의사항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운영실적 반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디지털 분야) 및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 후 6개월 이내 2023.12.31.까지 개시한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먼저 참여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및 K-디지털 트레이닝 취업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2024.1.1. 이후 개설한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먼저 참여한 훈련과정의 취업률 산정대상에 포함

○ (성과점수 산정방법) 성과지표별 점수에 실시비중을 반영한 직종별 점수를 산출 및 합산하여 기관 전체 성과점수 부여(70점 만점)

- 훈련기관의 직종별 점수가 직종 내 하위 10% 미만인 경우, 해당 직종 훈련과정은 훈련사업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

실적보유기관 성과지표 및 배점

실업자 훈련생	재직자 훈련생
일반취업률(32점)	-
고용유지기간(13점)	-
수요자만족도(25점)	수요자만족도(70점)
㉑	㉒
∑직종별 실업자지표 점수 × 실업자 실시비중(%)	∑직종별 재직자지표 점수 × 재직자 실시비중(%)
점수부여 : (㉑) + (㉒), 70점 만점	

- '3년인증' 이상의 인증등급을 보유한 집체훈련기관(이하 다년인증등급 보유 기관)은 훈련성과 모니터링만 실시(단, 희망할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 실적산정기간 내 평가대상사업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기본평가만 진행

- 2025년 경제전망,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인원 규모', '만 40세 이상 취업'에 대한 가중치 확대(38p 참조)
- 성과지표 및 점수 산출 시 소수점 반올림 처리하지 않음

2. 현장평가

- **(평가대상)** 현장평가 참여 필수 및 선택(참여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현장평가 대상 구분 >

구분	평가대상
현장평가 참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 보유한 인증등급이 '인증유예'인 기관 ※ 2024년도 현장평가 참여하여 '1년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현장평가 면제 (단, 연속 면제 불가)
현장평가 참여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유기관 중 2026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단, 새로운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여 필요
현장평가 참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기관

- **(평가대상 직종 선정)** 다음 선정기준에 따라 NCS 소분류* 단위 최대 3개를 선정하여 현장검증 실시

* 단, 훈련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진행

< 현장평가 대상 직종 선정 기준 >

구분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순위		
1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실적(실시인원) 가장 높은 직종(1개)	신규로 과정 신청한 직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1~2개)
2	신규로 과정 신청한 직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1~2개)	
우선적용	과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종	

* 현장평가 대상 직종 수 등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심사평가 정정·보완 마감 이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

* 단, 과정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종은 현장평가 일정 통보 시 안내

- 현장평가 대상 직종 안내 후 훈련기관에서 임의로 직종 변경(추가, 삭제 등) 불가

- **(평가항목)** 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3개 항목

- 실적보유기관 30점 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계	30점	100점
훈련운영관리	13점	40점
훈련인프라	9점	35점
훈련전담인력	8점	25점

유의사항

▲ 현장평가 항목 중 **훈련운영관리 인정범위 확대**

-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관리 체계 확보' 문항 평가 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수자평가를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 일부 인정
- '훈련생의 훈련적응과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문항 평가 시 공공·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의 협업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기준 일부 인정

○ **(평가방법)** 훈련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하고 현장평가 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 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훈련운영 관련 자료 확인, 훈련인프라(시설·장비 등) 점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 평가대상 직종 수,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위원 수, 평가시간 등 현장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

평가시간	최소 2시간(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를 참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제출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현장평가 일부 항목(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점수를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로 준용하되, **현장평가 전체 절차는 일반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실시**

- 단,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할 경우 우수훈련기관 신규 선정에서는 제외

○ **(일정안내)** 현장평가일 기준 14일 이전 훈련기관에 SMS 및 이메일 발송

- 상세 일정은 SMS 및 이메일 수신 후 훈련기관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유의사항

○ 현장평가 관련 공지 및 알림은 **훈련기관별 심사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를 통해 안내**

- 심사평가 참여신청서의 '평가담당자정보'의 세부정보(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심사평가시스템에서 '담당자변경(메뉴명)' 조치 필요**
- 담당자 정보 오기 및 수신 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기관의 귀책사유이므로 훈련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사전 확인 필요

1. 훈련과정 신청대상 및 과정수

□ 신청대상

<과정심사 신청대상>

훈련 대상	훈련사업 유형(주 훈련대상)	약어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국기
	일반계좌제훈련(실업자)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일반계좌제훈련(재직자)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사업주 위탁

유의사항

- ▲ (실시가능직종 보유) 과정심사 신청 전 NCS 소분류 단위 실시가능직종을 사전 등록·승인 필요, 미승인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 불가
 - ※ 단, 시설유형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일 경우 실시가능직종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 ▲ (NCS 확인강사 등록) 신청·접수할 훈련과정의 훈련교·강사는 반드시 NCS 확인강사로 승인받은 사람만 등록(해당 교·강사는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가능

□ 신청 가능 과정 수

- 주 훈련대상별 최근 2개년 평균 운영 과정 수* 산정하여 1.5배율** 적용
 - 미개설 과정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과정 수 차감

* 2023.1.1.~2024.12.31. 내 종료 과정 수

** 우수기관 2.0배, BHA 2.5배

- 신규기관은 최대 10개 과정 신청 가능

<신규기관 주 훈련대상별 과정심사 신청 가능 과정 수>

훈련사업 유형	신청 가능 과정 수	합계
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최대 10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최대 10개	

2. 훈련과정 편성방법

훈련과정 편성 공통사항

□ 훈련직종

- 훈련과정 신청 시 반드시 신청한 훈련과정에 가장 적합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분류코드 기재
 - 훈련과정의 NCS 및 KECO가 훈련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직종으로 재분류하여 심사
- ※ 직종 재분류된 훈련과정의 심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도 해당 직종이 유효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훈련기관의 실시가능직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훈련 운영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활용

-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기존의 NCS 필수 편성 비율과 무관하게 편성 가능
 - 편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훈련직종, 훈련비, 시설·장비 등은 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훈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NCS 필수 적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나, NCS를 활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 가능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공지 예정인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고

- ▲ (NCS 편성단위)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모두 NCS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단위로도 편성 가능
- ▲ (NCS 편성시간) NCS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및 NCS전공교과의 총 훈련시간은 제한없이 편성 가능하며, 편성시간의 적정성은 과정적정성 심사 시 판정

□ 민간기업 우수 프로그램 설계 과정

- 민간기업이 개발·운영한 훈련프로그램을 기업-훈련기관 간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는 경우 심사 간소화

- 해당 민간기업 훈련프로그램의 우수성, 교육사례, 훈련실적*, 기업 규모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훈련내용', '훈련방법' 심사항목은 확인 내용으로 대체

* 고용노동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가능

※ 민간기업 프로그램의 적법한 사용 권리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편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설명회 및 자료집에서 안내

□ 재량교과

- 훈련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현장 견학·참관, 입학·수료식, 취업활동 지원 등의 내용은 총 훈련시간의 10% 내에서 최대 20시간까지 허용
- 단, 상대적으로 장기 훈련인 실업자 국가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 시 총 훈련시간의 10% 내에서 최대 60시간까지 재량교과* 편성 가능

* 취업특강, 선배와의 대화, 취업컨설팅 등 포함하여 편성 가능

※ 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훈련내용 및 시간을 편성하는 과정은 재량교과 편성 불가

□ 혼합훈련 과정

- 훈련대상별 편성 기준에 따라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비대면실시간훈련을 혼합하여 편성
- 전체 훈련시간의 50% 내에서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비대면실시간 훈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원격훈련 편성 시 전공 훈련내용 (NCS 전공교과 등)을 포함하여 편성해야 함(인터넷원격훈련은 직업 기초능력만 편성 불가)

<훈련과정 편성 가능 유형>

구분	편성 가능 유형
집체훈련	집체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집체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 비대면실시간훈련
	집체훈련 + 비대면실시간훈련

<훈련대상별 혼합훈련 편성 기준>

훈련 대상	혼합훈련 편성 기준
국기훈련	총 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 총 훈련시간 중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 훈련 시간의 합은 50% 이하 일 것
실업자 계좌제	총 훈련시간은 140시간 이상, 총 훈련시간 중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 훈련 시간의 합은 50% 이하 일 것
재직자 계좌제	총 훈련시간은 40시간 이상, 총 훈련시간 중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 훈련 시간의 합은 50% 이하 일 것

- 인터넷원격훈련의 1차시(1시간)는 재생시간 기준 25분 이상으로 구성하고 재량학습활동 편성*

* 1차시의 재생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 재량학습활동 제외 가능

- 25분 미만인 차시가 일부 포함된 인터넷원격훈련은 재량학습활동을 과제형*으로 편성

* 실습형 콘텐츠인 경우 실습형 과제, 이론 콘텐츠인 경우 서술형 과제 권장

○ 법령 및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집체훈련’으로만 실시해야 하는 훈련과정은 혼합훈련으로 신청 불가

○ 혼합훈련 과정 설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 전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컨설팅 신청* 가능

* 컨설팅 관련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컨설팅TF팀(02-6943-9950)으로 문의

□ 법정 훈련과정

○ 사업주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법정직무훈련’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하는 훈련 중 타 법령에서 훈련 내용, 운영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훈련인 경우, ‘기타 법정훈련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관련 법령 명시

- 심사 시 제시된 근거 법령의 내용 반영 여부를 검토

※ 법정 훈련과정에 해당하나 관련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된 후 법령 미반영 사항이 확인된 경우, 훈련과정 선정이 취소되거나 관할 고용센터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 법정직무훈련

- ▶ **(정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4호)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통 법정직무훈련은 제외(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 ▶ **(운영)** 법정직무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하며(규정 제8조), 훈련비 50% 적용(규정 [별표4])

□ 현장실습 과정

- 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이 필요한 과정*은 반드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편성
 - 그 외 산업현장에서 구비하고 있는 고가 및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훈련 현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 교과를 편성
 -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아이돌봄인력 양성 훈련과정 등
- 현장실습 훈련과정의 경우 과정적정성 심사 '조건부 적합' 판정 후 관할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현장실사(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
 - 현장실사 결과 시설, 장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

□ 안전보건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실업자 훈련과정(실업자 계좌제, 실업자 국기)은 안전보건교육 편성
 - ※ 훈련내용 및 훈련교재는 기 개발된 NCS능력단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 활용(상세 내용은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고)

□ 훈련교·강사 신청

- 훈련과정 교과목별 최대 3명까지 'NCS 확인강사'*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 * 훈련교·강사는 자격, 경력 등을 고용24(www.work24.go.kr)에 등록 → 능력개발교육원 승인(40점 이상) 및 NCS 확인강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 (경로) NCS 확인강사 신청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ttps://hrdi.koreatech.ac.kr/>) > 공지사항 > NCS 확인강사 신청방법 안내 참고

- **훈련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강사는 2025년에 참여한 훈련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과정심사 결과 공고 시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이라도 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강사가 **2025.12.31.까지 기초 또는 기본교육 대상*일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기본교육 대상)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이수, (기초교육 대상)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기초교육 2시간 이상 이수
- **교과목 내 전문성(역량)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모두 충족한 교·강사가 없을 경우 훈련교·강사 조건부 적합 판정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과정적정성 심사 시 2025.1.1.~ 2025.9.30.까지 훈련에 참여한 시간 및 일 수를 기준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반영

실업자 국기훈련 관련

□ 국기직종 정의 및 취업목표

- 반드시 '국기직종 정의'를 확인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편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편성하고, 국기직종에 부합한 KECO를 선택, 수료 후 취업분야를 명시하여 취업목표를 기술
- 선택된 KECO 분류 및 작성된 취업목표가 국기 직종별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성된 교과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판정

□ 실업자 국기 프로젝트 훈련과정(이하 국가-프로젝트)

- 국기훈련 총 훈련시간의 20% 이상을 프로젝트 훈련으로 편성한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훈련비 지원 단가 10% 우대 지원
- 국가-프로젝트 훈련은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혼합훈련으로 설계 및 신청 불가
- 프로젝트 훈련은 단순 실습과 차별화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세부 활동 계획을 작성한 '국가-프로젝트 훈련 운영계획서' 제출 필수
- ※ [붙임9] 2025년 국가-프로젝트 훈련 심사기준 참고

□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 선정 요건**(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반영)

○ (국기과정) 실적 산정 기간* 내의 해당 국기직종 또는 국기직종이 속한 NCS대분류**의 훈련이수자평가 C등급 이상 보유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기직종에 신청한 훈련과정 모두 선정 제외하며, 신청한 국기직종별로 종료한 국기훈련과정이 없을 경우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반영 요건 적용 제외

* 훈련종료일자 기준 직전 2개년(2023.1.1.~2024.12.31.)

** 국기직종이 속한 NCS대분류는 [붙임10] 국기직종-NCS연계표에 한하여 인정하며, ①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일반계좌제, 일반고 특화과정) 훈련이수자평가, ②K-디지털 트레이닝 및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프로젝트 평가(20점 이상), ③BHA 자체시행 평가 결과로 인정 가능

※ ②의 프로젝트 평가 결과는 국기직종별 프로젝트 평가 점수(20점 이상)를 보유하여야 함 (K-디지털트레이닝 및 기업맞춤형 국기 성과평가를 위한 '대체등급'과는 무관)

○ (국기-프로젝트 과정) 실적 산정 기간 내에 종료한 국기-프로젝트 과정의 '1회차 훈련' 훈련이수자평가 C등급 이상 보유

- 국기-프로젝트 과정의 1회차 훈련(종료일자 기준)의 훈련이수자평가 C등급 이상 미보유 시 다음 국기-프로젝트 과정 선정 시 제외*하며, 종료한 과정이 없을 경우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반영 요건 적용 제외**

*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국기-프로젝트 훈련과정 선정 제외

** 실적산정기간이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자 기준)이므로, 2025년에 훈련이 종료되는 과정은 2025년 국기-프로젝트 심사에서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반영이 유예되며, 2026년 심사에서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반영

※ 국기-프로젝트 훈련은 BHA 기관의 훈련이수자평가 자체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훈련이수자평가 참여 필수

□ **과정평가형자격 훈련과정**(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과정)

○ 아래 실업자 국기직종은 과정평가형자격 훈련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자 국기직종 정의 및 편성 가이드 등에 따라 심사

※ 과정평가형 훈련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지정되지 못한 훈련과정은 선정 취소

○ 국기직종 연계 과정평가형자격 훈련과정은 심사 신청 한도 및 성과 적정성,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시 반영

* 단, 특화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정평가형 과정은 실업자 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및 실업자 국기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과정평가형자격(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현황>

등급	종목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명	실업자 국기직종
계	11개	-	
기사	1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산업 기사	4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제작
기능사	6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전자출판기능사	출판
		웹디자인개발기능사	디지털디자인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설계제작

※ 상세사항은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https://c.q-net.or.kr>)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 문의

□ **국기직종별 운영가능 훈련인원 미차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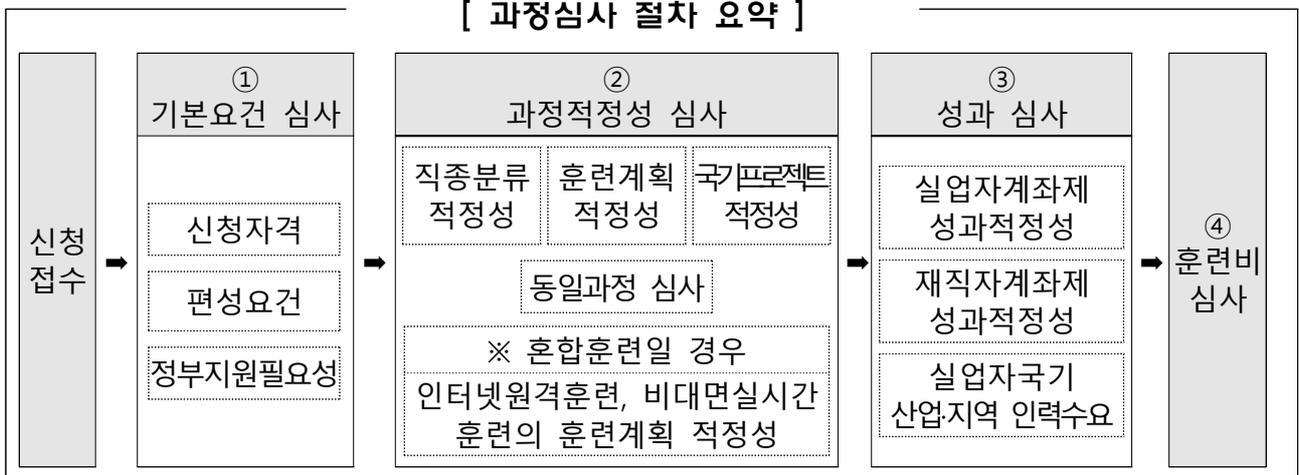
○ (중장년특화 훈련) 해당 국기 직종*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중장년 (만 40세 이상) 참여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중장년 훈련생은 '직종별 운영가능 훈련인원'에서 미차감

* 친환경건축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열냉동기계, 내선공사, 전기시스템제어, 태양에너지, 스마트의류, 환경보건관리, 스마트팜구축, 특수용접, 건축목공

○ (산재근로자) 훈련생 유형이 산재근로자인 경우 '직종별 훈련가능 인원'에서 미차감

2. 심사 절차 및 기준

[과정심사 절차 요약]



① 기본요건 심사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 신청자격, 훈련과정 편성 요건, 정부지원 필요성 심사
 - 시설유형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인 경우, 지정 요건 완화에 따라 실시 가능직종으로 승인받지 않은 직종도 심사 신청 가능
 -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직종에 없는 직종의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 결과를 '조건부 적합'으로 하고,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 전까지 지정 직종 추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변경

② 과정적정성 심사

□ 직종분류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의 NCS 직종 분류의 적정성 심사
 -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은 추가적으로 훈련내용에 부합하는 KECO 직종으로 신청되었는지 심사

□ 훈련계획 적정성 심사(집체훈련)

- 훈련내용·방법, 교재, 교·강사, 시설, 장비 등의 적정성 심사
 - ※ [붙임3] 훈련계획 적정성(과정적정성)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훈련대상 선정, 훈련교재 등 훈련계획 일부가 미흡하더라도 '조건부 적합' 판정하여 보완 기회 부여
- 우수훈련기관의 훈련시설·장비는 정원 기준이 아닌 훈련내용에 부합하는 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 ※ 훈련과정 운영 시 회차별 실시인원에 따라 NCS 훈련기준 등을 준용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 점검

□ 훈련계획 적정성 심사(혼합훈련)

- 혼합훈련의 운영계획 및 훈련유형(집체훈련,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 훈련) 간 연계성 심사
 - ※ [붙임4] 혼합훈련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원격훈련 콘텐츠) 콘텐츠 품질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사
 - 인터넷원격훈련(공공콘텐츠, 조달콘텐츠, 자체콘텐츠)을 실시하는 과정은 2025.5.16.(금) 18:00까지 활용하는 LMS에 전체 콘텐츠를 탑재 완료해야 하며,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 부적합 판정
 - ※ STEP 사용 및 공공콘텐츠 탑재 관련 세부 사항은 온라인평생교육원으로 문의
- (원격훈련 LMS) 혼합훈련이 가능한 LMS 보유 여부 심사
 - LMS(자체 LMS, STEP 학습관리시스템 등)를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해당 LMS로 훈련과정 신청
 - LMS 미보유 훈련기관은 공공 LMS인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거나, '자체 LMS*' 확보
 - * 자체 LMS를 활용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원격훈련관리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인증 LMS 계약 후 심사 신청 시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혼합훈련 LMS 유형 및 구축 방법>

LMS 유형	구축 방법
STEP 학습관리시스템	· 혼합훈련 과정 최종 적합 시 STEP 분양
자체 LMS	·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하거나, 직접 임대한 LMS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LMS 인증을 받아야 함

- (비대면실시간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심사
- 동일과정 신청여부 심사(실업자·재직자 계좌제 과정에 한하여 적용)
- 훈련생의 동일 훈련과정 반복 수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동일·유사성 여부를 심사
 - 실업자·재직자 계좌제 과정은 훈련목적, 훈련내용(과정편성), 취득 자격 등의 동일성이 높은 경우 기관별 해당과정 중 1개만 선정
 - 다만, 훈련 다양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동일과정의 범위*를 적용하고, 세부 기준은 설명회 및 자료집에서 안내
 - * 훈련직종(NCS 세분류), 총 훈련시간, 훈련수준,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관련자격증 등 정량·정성적 유사도 분석 결과 활용 예정
 - ※ 훈련기관이 동일 과정 신청으로 신청 가능 과정 수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 신청 단계에서 동일과정 신청 주의 필요

③ 성과 심사

□ 실업자 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합(또는 조건부적합)인 실업자 계좌제 과정 중 직종별(NCS 소분류) 평균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

* 실업자 및 40시간 이상 재직자 계좌제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심사방법) NCS 소분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심사대상은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저성과 훈련 과정은 선정 제외

<실업자 계좌제훈련 성과적정성 심사기준>

구분	기준	결과
심사대상 (평균수료 인원 5인 이상)	NCS 소분류 직종별 하위 30%가 되는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 기준점수는 지표별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과정을 대상하여 산정 단, ①일반사무, ②식음료서비스, ③음식조리, ④제과·제빵·떡제조 등 계좌제훈련 집중도 상위 4개 직종은 하위 40%로 기준점수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 직종 (의료기술지원)은 집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적합
심사제외 (평균수료 인원 5인 미만)	NCS 소분류 기준 실적산정 기간의 평균 수료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적합 (5회차 제한)
	NCS 소분류 기준 실적산정 기간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적합 (5회차 제한)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도 11회차, 13회차)에서 성과적정성 심사 없이 회차 제한으로 선정된 과정을 미개설하거나 5인 이상 실시하지 않은 직종	부적합
NCS 소분류 기준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 미발생(0명) 또는 취업률 0%인 훈련과정		부적합

- (심사우대) 자영업자 특화과정, BHA의 신청 과정은 성과적정성 심사 면제
- (산정대상·기준) 통합심사 훈련과정(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2025년 경제전망,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산정 시 '취업 인원 규모', '만 40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 확대

※ 세부 기준은 [붙임6] 성과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참고

- (추가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할 수 있음

- ① 지역 사군 단위 기준 지역 내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 ② 경제상황, 지역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가능

□ 재직자 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합(또는 조건부 적합)인 집중도 상위 4개 직종*(NCS 소분류) 재직자 계좌제 훈련과정 중 직종별 평균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

* 2025년 심사평가 시 상위 4개 직종은①일반사무, ②식음료서비스, ③음식조리, ④제과·제빵·떡제조로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 직종(의료기술지원)은 집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훈련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 기준

- (심사방법) NCS소분류 기준으로 아래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대상은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저성과 훈련과정은 선정 제외

<재직자 계좌제훈련 성과적정성 심사기준>

구분	기준	결과
심사대상 (평균수료 인원5인 이상)	NCS 소분류 직종별 하위 30%가 되는 기준점수* 미만 과정 * 기준점수는 지표별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전체과정을 대상하여 산정함	부적합
심사제외 (평균수료 인원5인 미만)	NCS 소분류 기준 실적산정 기간의 평균 수료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적합
	NCS 소분류 기준 실적산정 기간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적합
NCS 소분류 기준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 미발생(0명) 훈련과정		부적합

- (산정대상) 통합심사 훈련과정(혼합훈련,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세부 기준은 [붙임6] 성과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참고

- (심사우대) BHA의 신청 과정은 성과적정성 심사 면제

□ 실업자 국기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 적합(또는 조건부 적합) 실업자 국기과정
-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율 또는 취업률이 0%인 과정은 부적합 판정

- (심사방법) 훈련 운영실적에 따른 정량 심사

- 동점 발생으로 배정인원(물량)이 초과될 경우 ①취업률, ②만족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정 선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지역·직종별 선정규모(인원) 내에서 훈련기관이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우선순위 입력 기간(정정보완 기간 내 입력 가능): 2025.4.28~2025.5.2.(예정)

- 지표별 산정기준(국기직종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및 순위를 부여 후 지역·직종별 배정규모(인원) 내에서 높은 순위의 훈련과정 우선 선정

※ 2026년 운영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 지역·직종별 배정인원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점수가 선정 순위 내에 포함되어도 훈련기관의 훈련실적 등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음

※ (예시) 국기 2그룹(선정규모 15%)에서 연계계좌제 및 국기 평균 10인 미만 실적을 합산한 직종별 총 수료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최대 1개 과정 선정 제한 등

<실업자 국기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기준>

구분	선정규모	대상	점수 산정 방법
1그룹	85%	운영실적이 있는 훈련과정 (직종별 평균 수료인원 10인 이상)	해당국기 직종의 취업률(40점) + 수요자만족도(20점) + 개설률(10점) + 가·감점
2그룹	15%	1그룹 부적합 및 실적 미보유과정 (직종별 평균 수료인원 10인 미만 포함)	연계 계좌제훈련(국기 10인미만 포함) 취업률(40점) + 수요자만족도(20점) + 개설률(10점) + 가·감점

- (심사우대) 우수훈련기관의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조선업 관련 직종, BHA 등에 대해 심사 우대*(단, 저성과 직종의 과정은 제외)

*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를 통해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선정하고, 필요 시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인원 추가 배정

- (산정대상·기준) 통합심사 훈련과정(혼합훈련 및 혼합훈련 추가 심사 과정 포함)

- 2025년 경제전망,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산정 시 '취업 인원 규모', '만 40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 확대

※ 세부 기준은 [붙임6] 2025년도 성과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참고

- (추가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 초과 선정 가능

- ① 특정 지역·직종의 배정물량이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직종의 선정현황 및 추가적인 인력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② 경제상황, 지역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특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직종별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선정 가능
- ③ 국기직종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연계 종목의 선정 과정이 없는 경우, 자격종목별 성과지수 최고점 훈련과정 추가 선정 가능
- ④ 그 외 지역·직종의 훈련과정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수 훈련과정 추가 선정 가능

- **(기타사항)** 선정된 훈련과정은 직종별 과정의 정원을 합산하여 '직종별 훈련가능 인원'이 부여되며, 부여된 훈련가능 인원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단, 집체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 국기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간 정원 합산 불가

④ 훈련비 심사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은 '훈련비 심사' 신청 시 훈련비 지원단가의 최대 150% 지원 가능
 - 훈련비 심사 신청 시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출한 증빙자료* 등은 훈련비 정산을 위하여 보관
 -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된 훈련비 환수 가능
 - 신청한 훈련비는 심사를 통해 항목별로 조정될 수 있음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의 훈련비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종별 지원단가 적용

III. 결과 확정 및 발표

1

훈련기관 인증등급

1.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 **(공통사항)** 현장평가 참여 시 차년도 1.1.부터 새로운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부여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기존 보유했던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은 2025.12.31. 자동 소멸되며, 2025년도 심사평가 결과로 새롭게 부여받은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2026.1.1.부터 적용
 -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 ※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인증유예' 부여
 -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유관기관* 의견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유예 가능
 -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평가 결과발표일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이 확인되거나 실적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 확인 (또는 발생) 시에는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시작일 또는 종료일 포함)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 **(실적보유기관)** 기본평가, 역량평가(훈련성과 평가 및 현장평가) 총점을 종합하여 '3년인증', '인증유예' 부여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3년인증	2026.1.1~ 2028.12.31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2026.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훈련성과 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인증유예 부여

- 현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은 기본평가 결과 '적합'이고, 훈련성과 배점(70점)의 40% 이상(28점) 획득*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보유한 인증등급 유지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성과평가 배점의 40%이상	보유등급 유지	해당 등급 유효기간
	성과평가 배점의 40%미만	인증유예	2026.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인증유예	

- **(신규기관)** 기본평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부여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현장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2026.1.1~ 2026.12.31
	현장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2026.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인증유예	

2.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 **(선정기준)**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선정

선정기준

- ①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역량평가(훈련성과 평가, 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80% 이상 획득(평가실시연도 현장평가 참여 必)
- ② 기본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 ③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이수자평가 참여하여 이수자평가 등급을 보유한 기관(단, 훈련이수자평가 평가포기 및 행정처분에 따른 최하위 등급은 인정 불가)

※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① 2023.1.1.~우수훈련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계약해지(인정취소) 또는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 ② 2022년~2024년 심사평가 결과 '인증유예' 이력이 있는 기관
- ③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 ※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 등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지위를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유효기간)** 2026.1.1.~2030.12.31.까지 적용하되, 우수훈련기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가능
- **(우대사항)** 심사평가 우대(가점, 유효기간 추가 부여 등), 인증마크 부여 등

우대사항

- **(유효기간)** 실적보유기관 기본 유효기간 3년에 2년 추가 부여
- **(홍보지원)** 우수훈련기관 인증마크 부여, 고용24 훈련기관 검색 시 인증마크 표기, 관할 고용센터에 홍보 포스터 배포
- **(과정심사)** 신청 가능 과정 수 우대, 성과심사(일반고 특화심사 포함) 가점 부여
- **(사업참여)** K-디지털 트레이닝 및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신청자격 부여
- **(유효기간)** 집체훈련과정 유효기간 추가 부여(국기훈련 제외)
 - ※ 단, 인증등급 유효기간 초과 불가하며, 산업·지역인력수요,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우수훈련기관의 우대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시점)** 2026.1.1.부터 적용
 - 단, 성과심사(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실업자 국기 및 일반고 특화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가점은 당해연도 심사평가에 미리 반영
- **(취소기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취소기준

- ① 우수훈련기관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계약해지(인정취소) 또는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기본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된 경우
- ③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이수자평가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2023년 선정 우수훈련기관부터 적용)
- ④ 실적산정기간 내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해당 지표별 전체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
 - * 훈련기관별 평균 훈련시간(평가 대상 훈련과정의 평균시간으로 산정)에 따라 4개 그룹(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 ~ 140시간 미만 ③ 140시간 이상 ~ 500시간 미만 ④ 500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여 훈련기관별 수수료율 (수수료인원÷실시인원)×100% 산정 및 그룹별 전체 평균 수수료율 산정
 -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수료율, 수요자만족도는 실업자와 재직자 등 훈련생 구분 없이 통합 평가하여 적용(다만, 재직자 훈련만 운영한 훈련기관은 일반취업률 제외)
 - ※ 훈련성과 평가 배점(집체: 70점)의 40% 미만 획득 시에는 지위 취소와 함께 '인증유예' 부여
- ⑤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
- ⑥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 지위 유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기관
 -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수렴 결과,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우수훈련기관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 단,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 취소

※ 우수훈련기관의 취소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 **(취소시점)** 2025년도 심사평가 결과 발표일로 적용하며, 우대사항 배제
 - 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위 취소
 - 지위 취소기준에 해당하나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지되었던 행정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즉시 취소
 - 우수훈련기관 지위는 취소되었으나 실적보유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인증' 부여하되, 유효기간은 우수훈련기관 선정 시 부여된 유효기간의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3년 부여
- ※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등급이 변동될 경우 우수훈련기관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훈련과정 유효기간도 조정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대상 성과협약훈련제 참여 안내

- 공모 선정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게는 성과가 우수한 직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면제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성과협약제 시행 예정
 - 직종별로 취업률 등 기본사항 외에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목표를 약정하고 훈련 실시 이후에는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자율적인 훈련 유도
- ※ 성과협약훈련제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2

과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훈련과정별로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판정
 - 조건부 적합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조건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신청하여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야만 훈련 실시 가능
- * 조건부 심사 신청 기간: 2025.11.10.~2025.12.31.까지
- 2025년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부적합' 판정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부적합' 판정

□ 유효기간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부여

※ 단, BHA 및 우수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 가능

□ 고성과 훈련과정 훈련비 우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실업자계좌제 훈련의 적합 과정 중 해당 훈련과정을 신청한 훈련기관의 직종별 실적과 훈련실시 규모에 따라 훈련과정을 선별하여 훈련비 지원 단가의 5% 우대

[고성과 훈련과정(직종) 훈련비 우대]

대상과정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 중 성과적정성 심사 또는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점수가 직종별 상위 10%인 과정
대상과정 중 선별기준	직종별 훈련실시인원이 직전 2개년간 다음 기준 이상인 직종의 훈련과정 선별 - 실업자 계좌제훈련: 연평균 150명 이상 - 실업자 국기훈련: 연평균 50명 이상
훈련비	- 실업자 계좌제훈련: 5% 상승 범위 내에서 훈련비 변경 기회 부여 - 실업자 국기훈련: 직종별 지원단가의 5% 일괄 상향

IV.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심사평가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입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심사평가 진행 중, 결과발표 이후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훈련성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에 반영(인증등급 취소, '인증유예' 부여, 훈련과정 선정 제외 등)
 - * 취업률 등 훈련성과 조작, 타 훈련기관의 정보 임의 도용 또는 훈련장비 임시 대여, 각종 증빙 허위 제출 등
- 별도 세부사항 및 공고 관련 사항은 2025년 4월 공지(예정)하는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
- 훈련과정 심사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 및 신청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현장평가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확인 결과 일부 사항이 거짓된 경우 심사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취업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훈련기관이 훈련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취업상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취업자로 확인받은 자에 한해 취업자로 인정

2. 기본 및 역량평가

- 심사평가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또는 ‘평가포기’한 경우 ‘인증유예’ 부여
- 본사,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훈련기관은 각각 심사평가 신청
- 심사평가 진행 중, 훈련기관을 폐업하거나 향후 훈련실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사전 ‘평가포기’ 신청
 -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권으로 포기 처리 가능
 - ※ (경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또는 인증평가) > 평가신청 조회 > 평가명 클릭 > 포기신청

3. 과정심사

□ 선정제외·선정취소

- 다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선정제외·선정취소 가능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촉계약을 하지 않은 훈련교·강사의 개인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무단 활용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
 -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훈련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효기간 조정

-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인 직종의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 위탁·인정제한 기간 만료일에 따라 훈련과정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부여

□ 법령 개정 반영 추가 과정심사

- 심사평가 접수 마감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심사평가를 신청한 훈련 과정에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 기타

- 신청 당시 훈련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비 계획을 증빙할 경우 선정 가능(조건부 적합 판정)
 - 단, 훈련실시 이전에 구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실시 불가
- 지역 및 직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정심사 신청*
 - * 적합률·모집률·개설률 등에 관한 심사지표 도입·변경을 통해 실적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
- 2025년부터 드론조종실습이 진행되는 훈련과정(09040105 직종 등)은 전문적인 훈련시설 및 장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 한하여 과정 선정할 예정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관이 2025년 과정심사 신청 시, 훈련시설 '조건부 판정'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은 조건부 심사 신청기간(~'25.12.31) 내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최종 선정 가능

V. 심사평가 개편 방향 사전 안내

□ 심사체계 개편

- 기관평가와 과정심사에 공통으로 포함된 지표는 통합·조정하여 심사평가 효율화('26년)

□ 과정심사 주기 확대

- 산업·훈련 요구에 맞추어 훈련과정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연 1회 심사 주기를 확대 예정('26년)
 - '25년에는 심사 주기 변경에 대한 적응 단계로 재설계된 심사 지표 및 프로세스의 시범적용을 위해 '수시심사' 시범 운영(별도 공고 예정)
- ※ '25년 수시심사 일정(안): 공고·신청(5월) → 결과발표(6월) → 훈련운영(하반기) 예정이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특화 국기훈련 운영

- 중고령층 등 대상 특성, 직종을 고려하여 훈련방법 및 운영을 차별화한 맞춤형 국기훈련 과정을 시범 운영
 - 개인별 보강, 반복학습 등 훈련대상 특성을 고려한 훈련설계, 취업연계·지원을 위해 기업과 사전협약 등 훈련요건과 훈련비 등 지원 우대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안내
- ※ '25년 중 별도 공고 예정

□ K-디지털트레이닝 공급 중복 직종 규모 조정(계속)

- 국기직종 중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훈련이 공급되는 직종은 '27년까지 순차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 조정

VI. 일정 및 문의처

○ 주요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예정)
1. 계획 공고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계획 공고	'24.12.27.
2. 설명회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계획 설명회	'25.4.1.~ '25.4.4.
3. 사전 오픈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시스템 심사평가 시범 사용 ※ 시범 기간 중 입력된 내용은 임시저장이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최종 제출 완료	'25.4.7.~ '25.4.13.
4. 접수	· 실시가능직종 신청 마감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신청·접수 ※ 훈련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에 따라 신청회차 선택 ※ 원격훈련 및 특화과정의 과정심사는 별도 공고에 따라 개별 신청	~'25.4.13. '25.4.14.~ '25.4.25.
5. 정정·보완	· 심사평가 신청 항목 일부 정정·보완	'25.4.28.~ '25.5.2.
6.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안내	·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안내	'25.6.20.
7. 결과 발표	·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집체) 심사평가 결과발표	'25.10.31.
8. 이의 신청 접수	· 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 기본평가, 역량평가, 과정심사 등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심사평가영역을 선택하여 신청(다중영역 신청 가능)	'25.10.31.~ '25.11.7.
9. 조건부 심사 신청	· 훈련과정 '조건부 적합' 항목 보완 신청	'25.11.10.~ '25.12.31.
10. 이의심의 결과 발표	· 이의신청 결과 발표	'25.12.9.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안내

문의사항	문의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문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www.ksqa.or.kr → 소통마당 → Q&A)
HRD-Net(심사평가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www.work24.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NCS확인강사 및 보수교육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

평가항목		평가기준						
준법성	제재 처분 내역	구분	기본 감점	추가 감점			훈련생 (수료생) 허위 취업 행정처분 건*	
				제한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부정수급 (100만원 미만)
		시정명령 (시정요구 포함)		1점				
	계약해지(인정취소),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5점	-	+3점	+6점	+2점	+5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10점	-	+5점	+10점	+2점		
*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공고 이후 행정처분부터 적용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준법성	과태료 부과 내역	과태료 1차 부과			과태료 2차 부과			
		감점 10점			감점 20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준법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내역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경우 해당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 근로감독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시정완료로 종결되었을 경우 감점에서 제외								
재정 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감점 10점			감점 10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재정 건전성	신용수준	<신용수준 평가 감점 기준>						
		기업 신용등급					감점기준	
		① A~B등급					-	
		② CCC등급(CCC+, CCC-포함)					5점	
		③ CC등급(CC+, CC-포함)					10점	
		④ C등급(C+, C-포함)					15점	
⑤ D등급, 사업자등록증명원 미제출					20점			
⑥ 무등급* 또는 불인정 서류(90일 경과 및 그 밖의 서류 등)를 제출한 경우								
* 기업이 신용정보를 비공개 요청하여 조회 불가 등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							

실적보유기관

□ 훈련성과 평가(7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취업률 (32점)	○ (산출방법) (해당 기관 일반취업률 ÷ 100) × 32점 ※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이 2023.1.1.~2024.12.31.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산출식) 일반취업률 = (6개월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취·창업인원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창업인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및 7개월 이내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취업정보를 등록하여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창업인원에 포함 ○ (가중치) 고용보험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고령취업(만 40세 이상), 산재근로자 여부, 취업인원 규모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취업률 산정시에만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중치 적용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 가입</td> <td>○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취약계층 가중치와 중복 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약계층</td> <td>○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포함 ※ 취약계층 내 가중치는 중복 미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업인원 규모 (직종별)</td> <td>○ 순수 취업인원(고용보험가입, 취약계층 적용 전) 기준으로 200명 이상 1.2, 400명 이상 1.3, 800명 이상인 경우 1.4을 적용 ※ 취업인원 규모 가중치는 직종별 취업인원 규모로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가중치 적용 방식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취약계층 가중치와 중복 적용	취약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포함 ※ 취약계층 내 가중치는 중복 미적용	취업인원 규모 (직종별)	○ 순수 취업인원(고용보험가입, 취약계층 적용 전) 기준으로 200명 이상 1.2, 400명 이상 1.3, 800명 이상인 경우 1.4을 적용 ※ 취업인원 규모 가중치는 직종별 취업인원 규모로 적용
	구분	가중치 적용 방식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취약계층 가중치와 중복 적용							
	취약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포함 ※ 취약계층 내 가중치는 중복 미적용							
취업인원 규모 (직종별)	○ 순수 취업인원(고용보험가입, 취약계층 적용 전) 기준으로 200명 이상 1.2, 400명 이상 1.3, 800명 이상인 경우 1.4을 적용 ※ 취업인원 규모 가중치는 직종별 취업인원 규모로 적용								
	○ (산출방법) (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180) × 13점 ※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이 2022.7.1.~2023.6.30.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한 실업자 훈련생 -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 남학생(상담기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고용보험가입) 포함								
고용유지기간 (1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2022.7.1.~2023.6.30.과 2023.7.1.~2024.6.30.으로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수요자만족도 (25점/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방법) 실업자 훈련생 = (해당 기관 만족도점수 ÷ 10) × 25점 재직자 훈련생 = (해당 기관 만족도점수 ÷ 10) × 70점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이 2023.1.1.~2024.12.31.인 훈련과정 수료 후 훈련생이 입력한 「고용24」수강평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산출식) 수요자만족도 = 응답한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 합 ÷ 응답한 훈련생 수 - 내일배움카드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과정 참여인원의 응답점수를 응답자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훈련별 훈련과정 참여자 응답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산출* 후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의 수료인원의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사업주위탁훈련은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 점수 반영 - 수료인원이 없거나, 만족도조사 응답자가 없는 등 수요자만족도 지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 단,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료생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 제출 시 수요자만족도 점수 0점 부여

□ 현장평가(3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훈련운영관리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④ 훈련생의 훈련적응과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는가?
훈련인프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 ② 훈련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③ 훈련운영에 적합한 훈련환경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②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신규기관

□ 현장평가(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훈련운영관리 (40)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초기상담, 고충 지원 등을 통해 훈련생을 관리할 수 있는가? ⑤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⑥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⑦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훈련인프라 (35)	① 기관의 경영원칙에 따라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②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③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④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해 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⑤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25)	①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② 훈련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심사항목	심사기준
① 훈련내용	<p>○ 훈련과정명, 훈련목표와 훈련대상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86개)으로 신청한 과정이 직종정의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p> <p>○ 훈련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주제별) 훈련시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p> <p>○ 교과목에 적정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p>
② 훈련방법	<p>○ 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p> <p>○ 훈련목표 성취 및 내용 습득을 위해 적절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p>
③ 훈련 교·강사	<p>○ 훈련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소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p> <p>○ 훈련과정에 포함된 모든 훈련교·강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훈련과정의 교과목별 모든 교·강사가 보수교육(기초 또는 기본)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2025.1.1.~2025.9.30.까지 훈련에 참여한 일 수 또는 시간이, ·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본교육(12시간) 이수 여부 심사 · 15일 또는 140시간 이하인 경우 기초교육(2시간) 이수 여부 심사</p>
④ 훈련시설	<p>○ 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 ○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훈련시설을 구비하였는가?</p>
⑤ 훈련장비	<p>○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 ○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사양(내구연도 등)이 적정한가?</p>

- 혼합훈련은 [붙임3]의 훈련계획 적정성 심사 기준과 다음의 혼합 훈련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훈련유형(집체훈련,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간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등 연계성이 부적정한 경우 기존 승인 이력이 있어도 현재 심사 기준에 따라 부적합 판정
 - 인터넷원격훈련(공공콘텐츠, 조달콘텐츠, 자체콘텐츠)을 실시하는 과정은 2025.5.16.(금) 18:00까지 활용하는 LMS에 전체 콘텐츠를 탑재 완료해야 하며,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 부적합 판정
 - ※ STEP 사용 및 공공콘텐츠 탑재 관련 세부 사항은 온라인평생교육원으로 문의
 - 비대면실시간훈련을 편성했을 경우 훈련과정 운영에 요구되는 교재, 장비, 재료 등을 훈련생에게 제공해야 함

<혼합훈련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혼합훈련 설계	공통	① 훈련유형(집체훈련, 인터넷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간 연계가 적정한가?	○ 충족 ○ 미흡
	비대면 실시간 훈련	① 훈련목표와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대면실시간훈련으로 편성 가능한 과정인가?	○ 충족 ○ 미흡
	인터넷 원격훈련	① 인터넷원격훈련에 적합한 LMS를 확보하였는가? ② 인터넷원격훈련의 콘텐츠 품질 및 내용이 적절한가? ③ 인터넷원격훈련 콘텐츠의 자체/조달 구분이 적절한가? ④ 인터넷원격훈련의 재량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이 적절한가?	○ 충족 ○ 미흡 ○ 조건부

- 아래 ①, ②번 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③훈련대상자, ④실습비 중 1개 이상 추가로 충족할 경우 고급 및 특화과정으로 인정

심사항목	고급과정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중소기업특화 (사업주 위탁)
① 훈련강사 (필수)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성(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현장 등) - 산업현장실무 경력자 우대 및 전공, 경력, 자격 사항이 적절한 경우 인정	
② 훈련내용 (필수)	- 난이도가 높거나(Level 5 이상)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과정 · 자격증 취득과정은 고급 및 특화과정에서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차별 또는 특화된 과정으로 판단 시 인정 가능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분야(생산 관리·품질관리, 기술경영) 중 특화 과정 (Level 4 이상)
③ 훈련대상자	1)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level 4 이하의 능력단위 (고숙련의 경우 5수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 채용 예정자 등 * 신기술분야 훈련은 수준에 상관없음 2)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3) 자격증: 기사, 1급, 기술사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 1)~3)의 훈련대상자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실업자 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70점)	취업률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40시간 이상)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①,②,③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적용)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②번 내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적용하지 않고 높은 가중치만 반영) ③ 가중치 미반영 취·창업인원(①,② 적용 전)이 200명 이상인 경우 규모 가중치 적용(200명 이상 1.2명, 400명 이상 1.3명, 800명 이상 1.4명으로 적용) ○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 						
	수요자 만족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훈련생 만족도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실업자+재직자)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고용24」수강평 만족도 점수 ○ 문항별 배점을 반영한 직종별 수요자만족도 점수 산출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개설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및 혼합훈련 추가심사과정 포함) 중 개설한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10점 만점 환산 점수 부여 - 산출식: (과정인정 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인정과정 수) × 100% ○ 산정대상: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2023.1.1.~2024.12.31.인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 전체)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 ○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가점 (3점)	우수훈련 기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A·최우수 훈련기관 3점 가점 ○ 우수훈련기관 1점 가점 						
감점 (최대 10점)	행정 처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4.1.1.~2024.12.31.(처분일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시정명령</td> <td>·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td> </tr> <tr> <td>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td> <td>·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td> </tr> <tr> <td>전 과정 위탁·인정제한</td> <td>·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td> </tr> </table>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 재직자 계좌제 성과적정성 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30점)	수요자 만족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훈련생 만족도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실업자+재직자)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고용24」수강평 만족도 점수 ○ 문항별 배점을 반영한 직종별 수요자만족도 점수 산출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개설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및 혼합훈련 추가심사과정 포함) 중 개설한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10점 만점 환산 점수 부여 - 산출식: (과정인정 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인정과정 수) × 100% ○ 산정대상: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2023.1.1.~2024.12.31.인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 전체)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 ○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가점 (3점)	우수훈련 기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A·최우수 훈련기관 3점 가점 ○ 우수훈련기관 1점 가점 	
감점 (최대 10점)	행정 처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4.1.1.~2024.12.31.(처분일 기준)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 실업자 국기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지표별 산정기준

○ (1그룹) 해당 국기직종 2년 평균 수료인원 10명 이상 보유 과정(선정 규모 85%)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70점)	해당 국기직종 취업률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해당 국기직종 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①,②,③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적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②번 내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적용하지 않고 높은 가중치만 반영) ③ 가중치 미반영 취·창업인원(①,② 적용 전)이 200명 이상인 경우 규모 가중치 적용(200명 이상 1.2명, 400명 이상 1.3명, 800명 이상 1.4명으로 적용) </div> ○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 				
	해당 국기직종 수요자 만족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훈련생 만족도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해당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실업자+재직자)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고용24」수강평 만족도 점수 ○ 문항별 배점을 반영한 직종별 수요자만족도 점수 산출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해당 국기직종 개설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및 혼합훈련 추가심사과정 포함) 중 개설한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10점 만점 환산 점수 부여 - 산출식: (과정인정 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인정과정 수) × 100% ○ 산정대상: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2023.1.1.~2024.12.31.인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 ○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가점 (3점)	우수훈련 기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A·최우수 훈련기관 3점 가점 ○ 우수훈련기관 1점 가점 				
감점 (최대 10점)	행정 처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4.1.1.~2024.12.31.(처분일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시정명령</td> <td>·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td> </tr> <tr> <td>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td> <td>·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td> </tr> </table>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 (2그룹) 해당 국기직종 2년 평균 수료인원 10명 미만 1그룹 탈락 과정(선정 규모 15%)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70점)	연계 계좌제훈련 취업률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40시간 이상)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국기 2년 평균 수료인원 10인 미만 직종 실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특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 말까지 HRD-Net 행정 지원시스템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취업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①,②,③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적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II 유형 중 특정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②번 내 중복 해당 시 가중치 중복 미적용) ③ 가중치 미반영 취·창업인원(①,② 적용 전)이 200명 이상인 경우 규모 가중치 적용(200명 이상 1.2명, 400명 이상 1.3명, 800명 이상 1.4명으로 적용) </div> ○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 				
	연계 계좌제훈련 수요자만족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훈련생 만족도 ○ 산정기간: 2023.1.1.~2024.12.31.(훈련종료일 기준) ○ 산정대상: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국기 2년 평균 수료인원 10인 미만 직종 실적 포함, 실업자+재직자)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고용24」수강평 만족도 점수 ○ 문항별 배점을 반영한 직종별 수요자만족도 점수 산출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연계 계좌제훈련 개설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훈련과정(혼합훈련 및 혼합훈련 추가심사과정 포함) 중 개설한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여 10점 만점 환산 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과정인정 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인정과정 수) × 100% ○ 산정대상: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2023.1.1.~2024.12.31.인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훈련 전체, 국기 2년 평균 수료인원 10인 미만 직종 실적 포함)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 ○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가점 (3점)	우수훈련 기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A:최우수 훈련기관 3점 가점 ○ 우수훈련기관 1점 가점 				
감점 (최대 10점)	행정 처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4.1.1.~2024.12.31.(처분일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시정명령</td> <td>·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td> </tr> <tr> <td>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td> <td>·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td> </tr> </table>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전 과정 위탁·인정제한</td> <td>·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td> </tr> </table>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대분류	기간산업직종(28개)	전략산업직종(24개)	서비스산업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 (3)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서작성자 (3)
교육·자연· 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 디자인·방송(5)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오 락·스포츠(1)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11)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18)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차),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 (3)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신소재 개발 및 제조 (2)	
화학· 바이오(2)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2)	
섬유·의복 (2)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12)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6)	
정보통신 (13)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B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 가구·공예 (4)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 안전 (9)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 지하수관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2)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구축 (2)	

조선업 관련 실업자 국기

조선 및 선박 수주 관련 직종(6개)	
플랜트 설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소재·부품·장비 관련 뿌리직종 실업자 국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뿌리 직종(15개)	
레이저가공	금형
특수용접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반도체장비설비	기계설계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생산기계
LED응용	밀링(머시닝센터)
산업응용로봇제어	선반(CNC선반)
자동차도장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

저탄소 관련 실업자 국기

저탄소 관련 직종(16개)	
태양에너지	외선공사
드론제어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제품SW구축	친환경 건축시공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플랜트 건설
기후변화대응관리	토양지하수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소음진동관리
스마트물관리	신소재 개발 및 제조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 산업별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국가 중점사업 훈련직종은 변경 및 추가 가능

- 국가-프로젝트 훈련은 ①프로젝트 훈련 설계 적정성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②훈련교강사 적정성 및 시설·장비 적정성 항목이 모두 Pass인 경우 ‘적합’ 판정
- (프로젝트 훈련 설계 적정성)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훈련 설계, 운영, 평가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훈련교강사 적정성) 프로젝트 훈련에 적정한 교강사 참여 여부 검토
- (시설·장비 적정성) 산업 현장에 적정한 훈련시설 및 장비 활용 여부 검토

< 프로젝트 운영계획 적정성 심사 지표 >

항목	세부지표	배점
프로젝트 훈련 설계 적정성	1.1 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 수준은 산업현장의 실무를 충실히 반영한 것인가? (현장 적용 가능성 등)	30
	1.2 훈련생 선발 계획은 프로젝트 훈련의 목표를 반영하였는가?	10
	1.3 프로젝트 운영계획이 적절한가?	30
	1.4 교강사의 프로젝트 지원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5
	1.5 프로젝트 훈련 평가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5
훈련 교강사 적정성	2.1 담당 교강사는 프로젝트 훈련 운영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P/F
시설·장비 적정성	3.1 산업현장에 맞는 최신 시설·장비를 구비하였는가?	P/F

직종코드	국기직종명	관련NCS대분류	관련 NCS대분류명
1000163	기술문서작성자	02	경영·회계·사무
1000163	기술문서작성자	19	전기·전자
1000163	기술문서작성자	20	정보통신
1000003	물류관리	02	경영·회계·사무
1000162	핀테크	20	정보통신
1000164	빅데이터 전문가	20	정보통신
1000020	게임콘텐츠제작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88	공공디자인	02	경영·회계·사무
1000188	공공디자인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012	디지털디자인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012	디지털디자인	20	정보통신
1000196	멀티미디어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96	멀티미디어	20	정보통신
1000014	제품디자인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014	제품디자인	15	기계
1000014	제품디자인	19	전기·전자
1000023	국제관광마케팅	02	경영·회계·사무
1000023	국제관광마케팅	06	보건·의료
1000023	국제관광마케팅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000029	BIM	14	건설
1000041	가스설비시공	14	건설
1000041	가스설비시공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035	건축목공	14	건설
1000040	건축설비 설계·시공	14	건설
1000040	건축설비 설계·시공	16	재료
1000038	실내건축	14	건설
1000038	실내건축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65	철도안전	09	운전·운송
1000165	철도안전	15	기계
1000165	철도안전	19	전기·전자
1000165	철도안전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034	측량	14	건설
1000199	친환경건축시공	14	건설
1000043	토목시공	14	건설
1000027	플랜트건설	14	건설
1000027	플랜트건설	19	전기·전자
1000044	플랜트설비	14	건설
1000044	플랜트설비	15	기계
1000044	플랜트설비	16	재료
1000190	금형	15	기계
1000191	기계설계제작	15	기계
1000191	기계설계제작	19	전기·전자
1000192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15	기계
1000192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16	재료
1000192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19	전기·전자
1000181	드론제어	15	기계

직종코드	국기직종명	관련NCS대분류	관련 NCS대분류명
1000181	드론제어	20	정보통신
1000072	레이저가공	15	기계
1000073	밀링(머시닝센터)	15	기계
1000077	산업응용로봇제어	15	기계
1000077	산업응용로봇제어	19	전기·전자
1000069	생산기계	15	기계
1000074	선반(CNC선반)	15	기계
1000198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15	기계
1000198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19	전기·전자
1000198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20	정보통신
1000193	열냉동기계	14	건설
1000193	열냉동기계	15	기계
1000193	열냉동기계	16	재료
1000193	열냉동기계	19	전기·전자
1000193	열냉동기계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66	영상촬영드론조종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66	영상촬영드론조종	09	운전·운송
1000084	자동차도장	15	기계
1000194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치)	15	기계
1000061	자동차차체정비	15	기계
1000167	자동차튜닝	15	기계
1000070	측정	15	기계
1000057	항공기정비	15	기계
1000208	신소재 개발 및 제조	16	재료
1000189	특수용접	14	건설
1000189	특수용접	16	재료
1000168	품질관리기술자	15	기계
1000168	품질관리기술자	16	재료
1000168	품질관리기술자	02	경영·회계·사무
1000207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17	화학·바이오
1000210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17	화학·바이오
1000102	스마트의류	18	섬유·의복
1000102	스마트의류	19	전기·전자
1000103	염색가공	18	섬유·의복
1000187	3D프린터 운용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87	3D프린터 운용	15	기계
1000187	3D프린터 운용	19	전기·전자
1000120	LED응용	15	기계
1000120	LED응용	19	전기·전자
1000112	내선공사	19	전기·전자
1000206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19	전기·전자
1000186	로봇시스템 인터그래이터	15	기계
1000186	로봇시스템 인터그래이터	19	전기·전자
1000111	반도체장비설비	19	전기·전자
1000113	외선공사	19	전기·전자
1000209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19	전기·전자
1000209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25	전기기기제작	19	전기·전자

직종코드	국기직종명	관련NCS대분류	관련 NCS대분류명
1000119	전기시스템제어	19	전기·전자
1000127	전자시스템제어	15	기계
1000127	전자시스템제어	19	전기·전자
1000118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19	전기·전자
1000118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20	정보통신
1000182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20	정보통신
1000183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83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20	정보통신
1000133	네트워크운영관리	20	정보통신
1000138	디지털컨버전스	19	전기·전자
1000138	디지털컨버전스	20	정보통신
1000197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20	정보통신
1000197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10	영업판매
1000200	사물인터넷(홈·산업IoT)	19	전기·전자
1000200	사물인터넷(홈·산업IoT)	20	정보통신
1000132	스마트웹&콘텐츠개발	20	정보통신
1000132	스마트웹&콘텐츠개발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71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15	기계
1000130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20	정보통신
1000136	정보통신설비	20	정보통신
1000135	제품SW구축	19	전기·전자
1000135	제품SW구축	20	정보통신
1000135	제품SW구축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70	증강현실	19	전기·전자
1000170	증강현실	20	정보통신
1000170	증강현실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000178	클라우드운영관리	20	정보통신
1000144	가구설계제작	22	인쇄·목재·가구·공예
1000146	보석디자인	22	인쇄·목재·가구·공예
1000021	출판	22	인쇄·목재·가구·공예
1000142	특수인쇄	22	인쇄·목재·가구·공예
1000147	광산자원개발생산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201	기후변화대응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202	녹색순환자원관리	20	정보통신
1000202	녹색순환자원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55	생태복원·관리	14	건설
1000155	생태복원·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205	소음진동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203	스마트물관리	20	정보통신
1000203	스마트물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95	태양에너지	19	전기·전자
1000195	태양에너지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204	토양·지하수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50	환경보건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75	스마트팜구축	19	전기·전자
1000175	스마트팜구축	20	정보통신
1000175	스마트팜구축	23	환경·에너지·안전
1000158	종자생산·유통	24	농림어업